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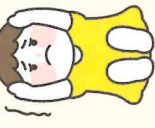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언제?

- 상처 및 상흔 등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않은 위생 상태가 관찰되는 경우

누가?

- 신고의무자 및 누구나!!!
- 신고의무자란? 교사, 의료인,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 26개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 발견(의심) 시 즉시 신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어떻게?

- 국번 없이 112로 즉시 신고

신고요령

- 아동학대 징후 인지 및 의심 사항 확인
- 아동학대신고 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정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 파악
-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의해 보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 상처 및 상흔에 대해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 보호자가 아동이 때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은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속한 성지식을 보인다.
-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에 돌아가기를 두려워 한다.
-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17개 이상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아동학대 관련기관 역할

구미시 아동보호팀(아동학대조사 전담)

- 경찰과 동행 출동,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 판단
- 보호조치 결정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 아동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시설입소 및 입양·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 피신고자 상담위탁 및 치료 연계, 부모교육 등 사례관리 연계, 제지·격리·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 신청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 전담)

-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안전 모니터링, 심리검사치로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 사례관리대상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치로 및 의료지원, 사례관리대상자 수탁 상담 진행 등
- 피해아동가정 경제 및 가사 지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가족부부 상담, 문화체험 등)

교육홍보

신고의무자 및 부모 교육, 아동 권리·학대예방교육 등

아동학대사례 업무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올바른 양육법 알아보기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훈육이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자는 체벌 대신 설명과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 달래주거나 그치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지쳐야 할 원직(예:방문)을 열어놓고 방에서 실컷 울고 나오도 좋아(등)을 간결하게 얘기한 후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를 통해 훈육합니다.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겐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고립된 장소에 강제로 혼자 있게 하거나, 버리고 간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들마다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아이의 성향,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훈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childcare.go.kr>

위 내용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게시된 육아상담 문답 중 일부를 발췌해 수정한 것으로, 아이의 연령, 성향 등에 따라 훈육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때’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폐지
민법 제915조
징계권
2021년 7월 폐지

**징계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범원의 허가를 얻어 김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NO,
아동행복 ON**

!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 구미시 아동보호팀 054)452-1391

